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사적분과 소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9. 11. 27. (수요일), 14:00 ~ 17:30
- ▣ 장 소 : 천연기념물센터 2층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재운, 김건수, 유재춘, 이승용, 진상철
(이상 5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주변 축사 양성화	(공 개)
2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3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4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청소년 수련 시설 정비	(공 개)
5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해변 재해위험지역 정비	(공 개)
6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 개)
7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공 개)
8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주변 공공주택사업 신축	(공 개)
9	사적 제204호 서울 의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 허가)	(공 개)
10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11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차량 정비고 및 차양대 신축	(공 개)
12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주변 서민임대아파트(159세대) 신축	(공 개)
13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도시계획도로(소2-23호) 개설	(공 개)
14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잠수교 승상(개량)공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15	사적 제206호 화성 율령과 건릉 주변 농경지 정비	(공 개)
16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소매점 신축	(공 개)
17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양식장 부지 조성	(공 개)
18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주변 관광농원 건립	(공 개)
19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	(공 개)
20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공 개)
21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동·식물관련 시설(축사/퇴비사) 신축	(공 개)
22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공 개)
23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공 개)

24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 개)
25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6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 개)
27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28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주변 비닐하우스 증축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소위 2019-10-001

1. 순천 낙안읍성 주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주변 축사(오리사)를 양성화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1983.06.14..지정)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읍성안길 117 외

(3) 신청내용<축사 양성화>

○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하송리 75-8(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42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건축면적	최고높이	용도	비고
주1동	1,648.70m ²	3.5m	축사(오리사)	
주2동	750.48m ²	3.5m	축사(오리사)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설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 반남 고분군(사적 제513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외
-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687-33 외[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4구역{최고높이 12m(2층 이하)}]
 - 사업내용
 - 태양광 부지 면적 : 1,221㎡(태양광 패널 최고높이 3.57m)
 - 기타 메시펜스(h=2m) 및 콘크리트 수로관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3.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설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나주 반남 고분군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 반남 고분군(사적 제513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외
- (3) 신청내용<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전남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687-34 외[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4구역{최고높이 12m(2층 이하)}]
 - 사업내용
 - 태양광 부지 면적 : 1,125㎡(태양광 패널 최고높이 3.57m)
 - 기타 메시펜스(h=2m) 및 콘크리트 수로관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4.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청소년 수련시설 정비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청소년 수련시설을 정비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주변 기허가된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화장실, 관리동 및 발굴체험장 설치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5년 7차 소위원회('15.07.22.)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로 발견된 유구 4개소에 대해 발굴조사 실시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사적 제519호)
 - 소재지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산24-1 외
- (3) 신청내용<청소년 수련시설 정비>
 - 위치 :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12-1 일원{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구분	시설명	당초 ('15.07.22. 허가)	금회 신청	비고
기반시설	도로	○	○	
	역사문화광장	○	△	변경
	주차장1,2	○	○	
	주차장3	-	○	신규
	관리동	-	○	신규
	야외화장실	-	○	신규

구 분	시설명	당초 (‘15.07.22. 허가)	금회 신청	비고
수련시설	열린캠핑장	○	○	
체육시설	다목적 구장1	○	○	풋살장
	모험체육장	○	○	극기훈련장
문화시설	금석문전시원지	○	○	
	고인돌전시원지	○	-	삭제
	문화비전시원지	○	-	삭제
	야외공연장	○	○	
	야외전시장	○	-	삭제
	발굴체험장	-	○	신규
	발굴현장보호지역	-	○	신규
환경학습시설	동물사육장	○	-	삭제
	야외학습장	○	-	삭제
모험활동시설	체험놀이마당	○	-	삭제
	놀이마당	○	-	삭제

라. 참고사항

(1) 자문의견('19.10.18./문화재위원 ○○○)

- 요지의 가시권 내에는 가급적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며, 관리동의 설계도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차폐를 위해 식재를 권함. 특히 발굴체험장 시설은 기존 발굴을 통해 확인된 가마터를 재현하고 그 옆에 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자문의견('19.10.18./문화재위원 ○○○)

- 시굴조사 확인된 유구는 복토 후 잔디식재하고, 경화 마사토로 유구 표현 (가능한 낮게) 하는것이 좋겠음.
- 발굴체험장 디자인은 유구와 어울리는 형태가 좋을 것으로 사료됨.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곳에 주차장을 두고 관리동은 분청사기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할 것.

(3) 자문의견('19.10.18./문화재위원 ○○○)

- 본 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내 관리동과 체험시설 건립을 위한 것으로, 체험시설은 조사된 요지 유구와 함께 배치하여 그 목적과 활용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시설 성격은 문화재 측면에서 무리가 없으나 시설물 규모·형태 등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시 전문가 자문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리동, 체험시설 등은 전문가 협의 후 시행할 것

5.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해변 재해위험지역 정비

가. 제안사항

강원도 양양군 소재 사적 제495호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해변 재해 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양 낙산사 일원 주변 해변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양양 낙산사 일원(사적 제495호 / 2008.12.18. 지정)

○ 소재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일원(전진리)

(3) 신청내용<위험지역 정비>

○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8-2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

○ 사업내용

- 거친돌 석축 설치

· 1단 석축 → A=92m², H=2.4m, L=38.8m

· 2단 석축 → A=93m², H=1.9m, L=49.4m

· 3단 석축 → A=94m², H=1.8m, L=52.9m

· 4단 석축 → A=87m², H=1.7m, L=52.9m

- 조경식재

· 잔디식재 → 평떼, A=530m²

· 관목류 식재 → A=190m²

· 수목제거 → 소나무 2주, 활엽수 2주

라. 참고사항

(1) 양양군 자문의견('19.10.3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과도한 시공을 지양하는 방향에서 설계하되 석축의 안전각도, 지형 변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제시한 안(案) 가운데 제2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일률적인 석축은 지양하고 자연스러움을 살릴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석축 사이에는 관목, 넝쿨식물 등을 식재하여 석축부가 최대한 차폐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 시공부 안전에 지장 없는 소나무는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

마. 의결사항

- 보류
 - 석축 공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후 높이 저감 및 친환경 공법에 대한 설계 보완

6.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문무대왕릉 주변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8차 소위원회('19.06.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9차 소위원회('19.10.23.)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 1967.07.24.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26
- (3) 신청내용<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조성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868, 청정누리공원 코라디움주차장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구분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상록수 파빌리온
	공작물 설치	태양광 시설	
8차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3,471.14m² ▫ 최고높이 : 3.8m ▫ 굴착깊이 : 최대 1.35m ▫ 구조 : 철골조(평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용량 : 352kw(405w*870매) ▫ 패널설치 - (가로)72.2m, (세로)82.8m 	
9차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2,477.47m² ▫ 최고높이 - 1 : 3.8m - 2 : 3.5m ▫ 굴착깊이 : 최대 1.35m ▫ 구조 - 1 : 철골조(경사지붕) - 2 : 철골조(평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용량 : 298kw(415w*720매) ▫ 패널설치 - 1 : (가로)51.69m, (세로)12.17m - 2 : (가로)49.45m, (세로)37.55m ※ 2단 방풍림 조성 	
금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면적 : 1,073.48m² ▫ 최고높이 : 3.5m ▫ 굴착깊이 : 최대 1.35m ▫ 구조 : 철골조(평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용량 : 99kw(415w*239매) ▫ 패널설치 - (가로)28.55m, (세로)37.6m ※ 2단 방풍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쉼터 - 규격 : Ø5.69m*H5.4m - 발전규모 : 2.4kwp - 위치 : 동선 고려 1안, 2안 제시

(4) 신청인 의견

- 문무대왕릉을 중심으로 주변문화재 「주제의식을 공유」 하는 태양광 쉼터를 조성하여 코라디움 방문객에게 기관의 친환경 이미지 및 역사문화 정신 전달
- 동경주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100kWp 미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정책 부응 및 지역 수용성 제고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파빌리온 디자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협의 후 시행할 것

7.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에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내용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경상감영지(사적 제538호 / 2017.04.26. 지정)

- 소재지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99

(3) 신청내용<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 위치 : 대구시 중구 사일동 15-1 외 2필지(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3구역(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물 높이 32m 이상 개별심의)}

- 시설물 설치 기간 : 2020. 11. ~ 2024. 10.

- 시설물 설치 현황 :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지하 7층, 지상 53층(197.4m)

- 연면적 : 83,840.32㎡

- 세대수 : 아파트 308세대, 오피스텔 64실, 판매시설

- 건폐율/용적률 : 74.30% / 930.47%

(4) 신청인 의견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상복합 개발사업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11.2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대구 경상감영지 좌측으로 119.8m 이격된 3구역(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구역)에 건축면적 4,250㎡, 연면적 83,840.32㎡, 높이 197.4m, 지상 5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정면의 중심 조망에서 벗어나 있으나 주변의 개발 정도에 비해 그 높이가 높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높이 과다)

8. 부여 화지산 유적 주변 공공주택사업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주변 공공주택사업 신축공사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화지산 유적 주변 부여 동남2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화지산 유적(사적 제425호 / 2001.01.04.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 외
- (3) 신청내용<공공주택사업 신축>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2번지 외 10필지(54-2답, 54-6답, 57답, 58답, 62답, 67답, 68-1답, 68-2답, 69-2답, 763도, 764-3구)
(문화재구역 연접/4구역)
 - 사업내용 : 부여 동남2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신축 공사
 - 규모 : 사업면적 15,094.00㎡, 연면적 9,222.91㎡, 건축면적 4,054.10㎡, 건물 최고높이 11.7m, 주 건축물 6동
 - 용도 :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 의견

- 본 신청건은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주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 사업 대상부지는 부여 화지산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상 제4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여 화지산 유적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에 바로 연접하고 있음

- 건물 최고높이는 11.7m로 해당구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제4구역-평지붕일 경우 최고높이 11m 이하 / 경사지붕(10:3 이상)일 경우 최고높이 15m 이하)을 초과하지 않으나,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대상임
- 부여 화지산 유적과 바로 연접하여 사업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비도성 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을 감안할 때 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 관련 제반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당해 문화재의 경관관리 측면에서 건물외관(마감재 및 색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위치도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시행

9. 서울 의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사적 제204호 「서울 의릉」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의릉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5년 12차 위원회('15.12.09.) 원안가결
 - 장기간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추가 및 건축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20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대{문화재구역과 연접 /2구역(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사업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용부지	115,363m ²	114,993m ²	감) 370m ²
연면적	422,315.06m ²	440,036.39m ²	증)17,721.33m ²
건축면적	26,635.80m ²	27,884.75m ²	증) 1,248.95m ²
용적률	235.10%	247.01%	증) 11.91%
규모	지상27층 40개동	지상27층 39개동	감) 1개동
최고높이	79.80m	78.90m	감) 0.9m
세대수	2,904세대	3,069세대	증) 165세대

- 허가기간 변경 : 당초 2019.12.31. ⇒ 변경 2025.12.31.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11.12./문화재전문위원 ○○○, ○○○)

- 본 건은 서울 의릉 연접부 이문1재정비구역 주책재개발에 따른 2015년도 허가받은 사항이 세대수, 높이 등이 변화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 도면에 따른 지형변화 여부, 배치 변화에 따른 경관 변화 정도 등을 알 수 있도록 단면도 및 입체적인 도면을 제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함.
- 문화재와의 경계는 어떤 형태의 휀스를 설치할지 설계도서에 명시 필요.
- 정확한 지적 측량을 통하여 지형, 경계 등 확정 필요.

(2) 사업추진 경과

연번	추진일자	추진내용
1	'09.09.09.	1차 문화재심의 - 보류
2	'09.10.14.	2차 문화재심의 - 부결
3	'09.11.11.	3차 문화재심의 - 보류
4	'09.12.09.	4차 문화재심의 - 조건부 허가(시굴조사)
5	'10.03.11.	사업시행인가(허가) 승인
6	'11.01.14.	5차 문화재심의 - 허가(시굴조사)
7	'11.12.14.	6차 문화재심의 - 조건부허가(표본 발굴조사)
8	'13.07.01.	서울시장 현장 실사(공공건축가 지원 결정)
9	'14.08.21.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서울시 고시 제2014-290호)
10	'15.04.06.	7차 문화재심의 -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11	'15.05.13.	7차 문화재심의 - 원안가결
12	'15.12.09.	8차 문화재심의 - 원안가결
13	'16.09.18.	사업시행 변경인가 승인
14	'18.09.18.	이주시작
15	'19.08.2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서울시 고시 제2019-280호)

마. 의결사항

- 보류
 - 경계 측량 및 휀스 설치에 대한 설계 보완

10.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삼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2차 위원회('19.02.13.)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7차 위원회('19.07.24.) 보류 : 자료수정 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3-93임, 62-336임{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70m 이격/1구역(개별심의), 2구역(평8m/경12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지상2층 8동, L자 옹벽(0~3m) 302m 설치

구분	1차('17.4.12)	2차('17.5)	3차('19.2.13.)	4차('19.7.24)	신청내용
대지면적	18,612㎡	14,324㎡	24,385㎡	17,148㎡	4,195㎡
연면적	13,630㎡	10,295㎡	5399.44㎡	3824.58㎡	1,109.84㎡
건축면적	7,520㎡	5,680㎡	3,468㎡	2,271㎡	540.72㎡
최고높이	지상2층 / 7.7m	지상2층 / 7.7m	지상2층 / 8.1m	지상2층 / 8.1m	지상2층 / 9.05m
건축규모	94세대	71세대	36세대	27세대	8세대
옹벽	h1~10m	h1~7m	h0~7.6m/2349m	h0~3m/2008m	h0~3m/302m
절성토량	-	-	-	13,890㎡/ 33,477㎡	2,168.47㎡/ 5,718.97㎡
심의결과	부결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부결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부결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보류 (자료수정 보완후 재검토)	-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07.1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파주삼릉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된 문화재 1구역, 2구역에 상당부분 포함되는 2층의 단독주택 26동 신축 건임
- 신청 지역은 인접부지가 2014년도 허가가 난 지역이며, 또한 이 건물은 기존에 여러번 신청된 적이 있음
- 현지조사 결과 1구역(개별심의구역)을 제외할 경우, 도로만 설치하는 행위는 경관상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9.02.01./문화재전문위원 ○○○, 전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파주삼릉 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된 문화재 1구역, 2구역에 상당부분 포함되는 2층의 단독주택 36동 신축 건임
- 조사결과 건물 신축시 18m 상향되어 공릉 등 능침에서 가시 될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부분 1구역에 해당되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자연환경이 양호한 임야의 상당부분 절성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1. 구리 동구릉 주변 차량 정비고 및 차양대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차량 정비고 및 차양대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주변에 차량 정비고 및 차양대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1번지

(3) 신청내용<차량 정비고 및 차양대 신축>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2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682.00㎡(차량 정비고), 470.00㎡(차양대)
- 건축면적(연면적) : 315.77㎡(432.62㎡), 160.58㎡(160.58㎡)
- 건축규모 : 지상 2층(높이 : 9.5m/경사지붕) 2개동, 경량철골조,
지상 1층(높이 : 5.1m/평지붕) 1개동, 경량철골조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12. 연천 전곡리 유적 주변 서민임대아파트(159세대)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주변 서민임대아파트(159세대)를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천 전곡리 유적 주변 서민 임대아파트(159세대)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1979.10.0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9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서민임대아파트 신축(159세대)>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8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 /6구역(연천군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4층 이하)}
 - 사업내용

구분	신청안	비고
건축부지	11,911.0㎡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건축면적	1,765.47㎡	
연 면 적	20,753.12㎡	
규 모	지상1층/지상12층~지상20층	
세 대 수	159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62.2m 【101동(51m), 102동(51.0m), 103동(62.2m),104동(39.8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11.1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연천 전곡리 유적의 지정구역에 70m 이격된 6구역(도시계획 및 관련법령에 의한 구역)에 지상 20층 최고높이 62.2m, 4개동의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이 평탄하여 지형변화가 없고, 전곡리 유적의 수림대에 의해 인지되지 않고, 주변 20층 규모 개발이 일부 이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단 도시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문화재청 협의가 필요하며, 관계전문가에 의해 변경하려는 구역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3. 울주 언양읍성 주변 도시계획도로(소2-23호) 개설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2.09.10. 조건부허가 :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
 - '19년 6차 소위원회('19.06.26.) 부결 : 언양읍성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도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1966.12.27.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 (3) 신청내용<도시도로계획(소2-23호) 개설>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동부리 171-10번지 외 12필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연결~약50m 이격/2, 3, 4구역)
 - 사업내용
 - 면적 : 도로조성 A=687m²
 - 규모 : L=113m, B=8m
 - 소2-22호 구간과 만나는 위쪽구간(1구간)은 블록포장, 아랫구간은(2구간)은 아스콘포장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06.20./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본 건은 울주 언양읍성 남문지 앞 폭 8m, 길이 113m규모로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언양읍성의 역사성(필지규모, 골목), 이격거리, 노선

등이 역사문화환경의 맥락을 해하고 있다고 판단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인근 주민 42명 도로개설공사 요청 연대서명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구간(블럭포장)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협의 후 시행할 것

14. 안동 도산서원 주변 잠수교 승상(개량)공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주변에 잠수교 승상(개량)공사를 하고자 행위허가(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초 안동 도산서원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기존 잠수교의 규모를 상향하여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하였으나, 문화재경관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1구역)에 교량을 신설(H:2.9m)하는 것으로 허가한 바 있음
 - '18년 6차 위원회('18.06.20.)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8년 9차 위원회('18.09.05.) 부결(H 2.9m,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경관 훼손 우려(교량의 높이 등 규모 과다)
 - '18년 8차 소위원회('18.10.24.) 조건부가결(H 2.9m, 1구역) : 위치·교량의 디자인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
 - '19년 6차 소위원회('19.06.26.) 부결 : 자료 미흡으로 심의 불가(댐 수위에 따른 교량 조감도, 최근 1년간 댐 수위 data 등)
- 물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18.6월) 됨에 따라, 안동댐 평균관리수위 증가로 인해 구조물의 계획고를 상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 1969.05.28. 지정)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3) 신청내용<잠수교 승상(개량)공사>
 -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의촌리 일원(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기 허가내용	금회 신청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개별심의구역 * 기존 잠수교 외 추가 건설 ○ 사업규모 - L=232m, B=4.45m, H=2.9m - 도로(4.45m) : 폭3.25 + 길어깨 양쪽0.6 + 난간(폭 0.6, 높이 0.2) - 차량교행2개소(L=20m,B=6.95m) - 파형강관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문양거푸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개별심의구역 * 기존 잠수교 외 추가 건설 ○ 사업규모 - L=404m, B=4.45m, H=7.7m - 도로(4.45m) : 폭3.25 + 길어깨 양쪽0.6 + 난간(폭 0.6, 높이 0.2) - 차량교행 2개소(L=20m,B=6.95m) - 파형강관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문양거푸집 	<p>중 L=172m 중 H=4.8m 위치조정</p>

(4) 신청인 의견(변경사유)

- 당초 현상변경 허가('18.10.) 당시 2007~2018년까지 평균수위 147.0m 기준으로 할 경우 325일 정도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2018.07.월부터 현재(2019.05.30.)까지 댐수위가 147.0m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현상변경 허가조건 수위인 147.0m로 할 경우 연중 물에 잠기게 됨에 따라 152.0m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서 제출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로 지역주민들은 곧 교량이 설치될 것으로 믿고 있으나 불가시 집단민원 발생 및 행정신뢰성 훼손
- 댐 물관리청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2018.06.)되면서 댐수위주의 물관리 정책으로 댐수위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8.07.16./문화재위원 ○○○, ○○○)

- 현재 교량은 안동댐 수위조절에 따라 통행일수가 줄어들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된 것은 인정됨.
- 주민의 생활에 편의증진과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교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최소한의 개선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신설 교량의 높이 조정에 따른 통행량을 단계별로 조사 및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교량의 폭은 기존 교량과 같이 편도 및 부분 교행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을 위한 교량의 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도산면 의촌지 교량 건설 청원서(58명 서명)

도산면 의촌리 교량 건설 청원서

안동댐이 건설된 후부터 도산면 의촌리, 예안면 부포리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안동댐 건설 당시 마을 주민들에게 약속되었던 교량 건설은 주민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50여년 간 교량건설을 요구했지만 도산서원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어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천에 다리가 없어 5분 거리를 1시간을 소요하며 둘러서 다니는 경우는 다른 시도를 통틀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섬과 섬 사이도 교량으로 연결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왜 의촌리, 부포리 주민들만 소외되어야 합니까?

차량으로 5분 거리의 면 소재지를 방문하려면 두 개 면을 거쳐서 1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럴싸한 거대한 교량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세월교에서 2미터 높여 147미터에 다리를 놓아봤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년 365일이 아닌 그 절반이라도 편하게 다니려면 152도선 높이 정도까지는 다리가 놓아져야 50호 농가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산면 의촌리 주민일동

붙임 : 주민서명록 1부.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5.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농경지 정비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농경지 정비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농경지 정비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187-1)
- (3) 신청내용<농경지 정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404번지 등 4필지{문화재구역과 연접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1,970m²
 - 수목제거 : 아카시아나무 등 73주 제거
 - 절토 : 2,394m³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11.06./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대상지는 건릉 서측 문화재구역과 연접된 곳으로 잡목 등이 식재된 산림지역(지목:밭/약11,970m²)에 수목 전수를 제거(신청본수/73주)하고 밭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음
 - 대상지를 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목제거와 절토가 수반되므로 역사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등 조선왕릉의 배경 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6.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에 소매점 신축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에 소매점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9년 9차 위원회('19.09.1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 1998.12.23. 지정)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외 일원
- (3) 신청내용<소매점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6, 3616-17번지{문화재구역으로 부터 123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구분	1차('19.05.22) / 부결	2차('19.09.18) / 부결	3차('19.11.27) / 금번 심의
대지면적	1,636㎡	804㎡	804㎡
건축면적	165.6㎡	158.29㎡	99㎡
연면적	165.6㎡	386.52㎡	99㎡
규모	지상 1층 / 경사지붕 (최고높이 6.6m)	지상 3층 / 경사지붕 (최고높이 10.3m)	지상 1층/경사지붕 (최고높이 4.25m)
용도	농업용 창고	다가구주택 및 소매점 (주차장 조성 - 184㎡)	소매점
구조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대지위치 및 지형변화	3616-26, 3617번지 / 지면으로부터 약1.5~7.5m 성토다짐	3616-26, 3616-17번지 / 지면으로부터 약 1.5m 성토다짐	3616-26, 3616-17번지 / 지면으로부터 약 1.5m 성토다짐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11.15./문화재전문위원 ○○○, ○○○)

- 본 건물은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에서 3구역과 접한 1구역에 건축규모 99㎡, 높이 4.2m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서 이격되어 있고 연접한 3구역에 3층 규모의 건축물이 있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단 현 계획된 마감재는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자연 재료를 사용함이 좋겠으며, 선사유적의 특성 상 사전 시굴조사가 필요함

(2) 1차 신청건(농업용 창고) 현지조사의견('19.05.20./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대지는 2단 경사로 되어 있어서 7.5m를 성토할 경우 기존 지형을 크게 흔들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1구역의 원지형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신석기 시대의 하천과 경사지로 된 원지형)
- 건축물의 규모가 크며 벽체는 흰색의 사이딩 판넬이어서 1구역에는 부조화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시행
 - 건물 색채, 재질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행할 것

17. 강화 외성 주변 양식장 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에 양식장 조성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주변 양식장(새우) 건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선원면, 길상면 일원

(3) 신청내용<양식장 조성(새우)>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3-4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 17,522㎡(비닐하우스 면적 미포함)

- 설치시설물

· 양식장 수조 17,522㎡(수조 토사 벽체높이0.8m)

· 비닐하우스 2동 560㎡(1개동 면적280㎡, 최고높이4.8m, 파이프조)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비닐하우스 설치는 제외할 것

18. 경주 명활성 주변 관광농원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주변 관광농원 건립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명활성 주변 관광농원 건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9년 8차 소위원회('19.06.26.)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과도한 지형 변경)
 - '19년 9차 소위원회('19.10.23.)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과도한 지형 변경)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명활성(사적 제47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보문동 산1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관광농원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산308-2번지 외 1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공사(변동사항 없음)

구분	A동	B동	C동	D동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건축규모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지상 1층
최고높이/연면적	5.8m/261㎡	5.6m/233㎡	6.0m/206㎡	4.4m/60㎡
용도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소매점, 창고관리실	야영시설

- 토목공사

구분	석축	콘크리트포장
8차 소위 원회	(H=0.0~3.0m), L=405 (H=3m), L=81	(T=20cm), A=841 m ²
9차 소위 원회	(H=0.0~2.0m), L=50 (H=0.0~2.2m), L=140 (H=0.0~3.0m), L=140 (H=3m), L=81	(T=20cm), A=841 m ²
금회	(H=0.0~1.5m), L=88 (H=0.0~2.0m), L=47 (H=0.0~2.2m), L=138 (H=0.0~3.0m), L=84 (H=3m), L=27	(T=20cm), A=841 m ²

라. 의결사항

○ 보류

- 설계 보완 후 재검토

19.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단독주택 건립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 일원

(3) 신청내용<단독주택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산86(문화재구역으로부터 67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골기와
- 최고높이/연면적 : 6.94m/97.5㎡
- 건축규모 : 지상 1층, 1동

(4) 신청인 의견

- 경주의 유구한 문화유산이 산재한 남산자락에 자연과 문화재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전통한옥(목조) 주택을 신축하여 주변 경관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남산주변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조경식재 계획으로 보다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0. 경주 남산 일원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주변에 휴게음식점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1985.02.23.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남산 일원
- (3) 신청내용<휴게음식점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003-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목조, 한식골기와
 - 최고높이/연면적 : 7.532m/합계 198㎡ [(가동) 99㎡, (나동) 99㎡]
 - 건축규모 : 지상 1층, 2동
 - 건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4) 신청인 의견
 - 사업대상지는 남산 일원 주변 동편에 위치한 농지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건립하여 관광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9.11.19./문화재위원 ○○○)
 - 휴게음식점 신축 건으로 현지에서 보았을 때 수목원과 접한 도로 측에서 정면이 계획되고 이와 관련 추후 유사한 건축물이 이 도로에 면해 신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인접해서 건물이 있고 인접된 도로 선형으로 보았을 때 남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다만, 건물 높이가 인접 건물과 비교하여 높아 낮출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물 산포지역으로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높이를 주변 건물보다 낮게 할 것)

21.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동·식물관련시설 (축사/퇴비사)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 신축을 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 신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사적 제241호 / 1974.12.14.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 (3) 신청내용<동·식물 관련시설(축사/퇴비사) 신축>
 -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64-2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 부터 72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최고높이 : 7.4m
 - 연면적 : 3,550㎡[(가동:축사,창고) 2,875㎡, (나동:육성우사) 375㎡, (다동:퇴비사) 300㎡]
 - 건축규모 : 지상 1층, 3동
 - 건물용도 :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
- (4) 신청인 의견
 - 신청지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퇴비사)을 신축하여 환경개선과 농가의 소득 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함.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2. 부여 능산리 고분군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능산리 고분군 주변에 기존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축사 전면에 교목 식재를 추가하여 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1 일원
- (3) 신청내용<기존 축사 양성화>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426, 426-1 등 2필지

	이격거리	허용기준	지목	매장문화재 현황
내용	191m 이격	3구역 ※ 공동사항: 개별심의	목장, 답	유존지역 아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450㎡

구분	시설현황	부결('19.5.22)	금회
시설규모	340㎡(우사)/1동(기허가) 증축 321.45㎡(우사 및 통로)	좌동	좌동
보완사항	-	-	(역사문화환경) 능산리 고분군으로부터 조망되는 위치에 교목으로 축사 차폐 식재 계획(1m 성토 후 높이 4m의 잣나무 일렬로 식재) (악취저감)폐수(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않게 폐수방지턱 보강 및 악취저감대책 보강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11.11./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서 190.9m 이격된 3구역(8m/12m)인 곳에 건축면적 661.45㎡의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능산리 고분군에 멀리 정면으로 인지되나 교목과 관목으로 차폐가 되도록 식재를 한다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저감될 것으로 사료됨

(2) 1차 신청시 현지조사의견('19.05.13./문화재위원 ○○○)

-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물은 부여 능안골 고분군, 부여 나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근거리에 위치한 총 3곳의 사적 주변에 허가 없이 증축 또는 신축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신청한 총 8건 중 하나로,
- 총 3건 사적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고, 금번 8건의 신청 외에 추가로 약 10여건이 신청 예정이므로,
- 이들 무허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여건, 그리고 허용기준 개별 구역 별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세부검토 기준을 설정 한 후, 개별 신청별로 이격거리, 조망성, 경관, 외관개선방안,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음

(3) 1차 신청시 현지조사의견('19.05.1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대상지 일대는 고도 부역을 대표하는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경관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특히, 보존영향 검토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기능적 특성(성, 고분군) 상 조망성 및 경관적 일체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검토기준이라 하겠음.
- 다만, 기존 허용기준에 따라 유사시설이 기허가된 상황과 축사 양성화 사업의 취지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원칙적으로 허용기준 상 1구역(중첩된 도지정 문화재 포함)과 문화재 구역에 인접한 지역의 축사는 경관저해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바 설치를 지양함.
- 다만, 1구역이라도 이격거리가 상당하고 지형으로 조망이 차폐된 지역에 기허가된 우사는 유지하되, 증축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한 계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1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축사의 신축은 경관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이전('19.5.13) 현지조사의견에 따라 권역별 현황 및 개별 신청별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금번 신청건(능산리 426 등 총 2필지)은 국도로 인해 문화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직접 조망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금번 신청내용을 포함한 한 신청 사업별 문화재에 미치는 보존 영향에 대한 세부평가의견은 다음과 같음

연번	위치	대상문화재	허용 기준	매장 유존	건축유형	조망 여부	비고
1	능산리 37	부여 능안골 고분군	2구역		우사(증축)	○	경관저해 우려
	능산리 43	부여 능안골 고분군	2구역		우사(신축)	○	경관저해 우려
2	능산리 15	부여 능안골 고분군	3구역	○	우사(증축)	○	구역경계부 위치고려 (신중검토 필요)
3	능산리 65-3 외 2필지	부여 능안골 고분군	3구역		우사(신축)	×	악취 고려(저감시설) (신중검토 필요)
4	능산리 479 외 6필지	부여 나성	1구역	○	계사(신축)	○	1차 불허/악취 고려
5	능산리 426, 426-1	부여 능산리 고분군	3구역		우사(증축)	○	경관저해 우려 (신중검토 필요)
6	염창리 527-1	부여 나성	3구역		우사(신축)	○	부여 나성 연결 (신중검토 필요)
7	중정리 88, 89	부여 나성	1구역		우사(신축)	○	도지정문화재 인접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목 식재는 관계전문가 협의 후 시행할 것

23. 부여 나성 주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주변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나성 주변에 기존 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19년 5차 소위원회('19.05.22.)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축사 주변 관목 식재를 추가하여 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일원
- (3) 신청내용<무허가 축사 양성화>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88 및 89

	이격거리	허용기준	지목	매장문화재 현황
내용	259m 이격	1구역 ※ 공통사항 : 개별심의	전, 답	유존지역 아님

※ 지방유형문화재(김거익의 묘, 문화재자료 112호) 40m 이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부터 13.9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765㎡

구분	시설현황	부결('19.5.22)	금회
시설규모	240㎡(우사 220.5㎡, 퇴비사 19.5㎡)/1동, 철파이프구조, 높이 4.6m	좌동	좌동
보완사항	-	-	(역사문화환경)나성으로부터 조망되는 위치에 관목으로 축사 차폐 식재계획(높이 3m의 잣나무 식재) (악취저감)폐수(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않게 폐수방지턱 보강 및 악취저감대책 보강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9.11.11./문화재전문위원 ○○○)

- 본 신청 건은 부여 나성으로부터 327.9미터 이격된 1구역(개별심의구역)에 건축면적 240㎡의 우사를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9년 5월 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부결된 것에 냄새 저감 대책과 시도문화재에서 인지되는 부분을 차폐식재로 보완하여 재신청된 사항임
- 나성에서 인지되지 않으며 시도문화재인 사당에서 차폐식재 한다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저감되었다고 보여짐

(2) 현지조사의견('19.05.13/문화재위원 ○○○)

-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 건은 부여 능안골 고분군, 부여 나성, 부여 능산리 고분군 등 근거리에 위치한 총 3곳의 사적 주변에 허가 없이 증축 또는 신축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자 신청한 총 8건 중 하나로,
- 총 3건 사적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공통으로 설정되어 있고, 금번 8건의 신청 외에 추가로 약 10여건이 신청 예정이므로,
- 이들 무허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여건, 그리고 허용기준 개별 구역 별 개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세부검토 기준을 설정 한 후, 개별 신청별로 이격거리, 조망성, 경관, 외관개선방안,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음

(3) 현지조사의견('19.05.1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대상지 일대는 고도 부여를 대표하는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경관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특히, 보존영향 검토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기능적 특성(성, 고분군) 상 조망성 및 경관적 일체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검토기준이라 하겠음.
- 다만, 기존 허용기준에 따라 유사시설이 기허가된 상황과 축사 양성화 사업의 취지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먼저, 원칙적으로 허용기준 상 1구역(중첩된 도지정 문화재 포함)과 문화재 구역에 인접한 지역의 축사는 경관저해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는바 설치를 지양함.
- 다만, 1구역이라도 이격거리가 상당하고 지형으로 조망이 차폐된 지역에 기허가된 우사는 유지하되, 증축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한 계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1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축사의 신축은 경관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이전('19.5.13) 현지조사의견에 따라 권역별 현황 및 개별 신청별 행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금번 신청건(중정리 88 등 2필지)은 부여 나성의 조망과 더불어 도지정 문화재(문화재자료 제112호) 김거익의 묘)와 인접하여 1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신축된 축사는 경관 저해 및 환경오염이 우려됨
- 금번 신청내용을 포함한 한 신청 사업별 문화재에 미치는 보존 영향에 대한 세부평가의견은 다음과 같음

연번	위치	대상문화재	허용 기준	매장 유존	건축유형	조망 여부	비고
1	능산리 37	부여 능안골 고분군	2구역		우사(증축)	○	경관저해 우려
	능산리 43	부여 능안골 고분군	2구역		우사(신축)	○	경관저해 우려
2	능산리 15	부여 능안골 고분군	3구역	○	우사(증축)	○	구역경계부 위치고려 (신중검토 필요)
3	능산리 65-3 외 2필지	부여 능안골 고분군	3구역		우사(신축)	×	악취 고려(저감시설) (신중검토 필요)
4	능산리 479 외 6필지	부여 나성	1구역	○	계사(신축)	○	1차 불허/악취 고려
5	능산리 426, 426-1	부여 능산리 고분군	3구역		우사(증축)	○	경관저해 우려 (신중검토 필요)
6	염창리 527-1	부여 나성	3구역		우사(신축)	○	부여 나성 연접 (신중검토 필요)
7	중정리 88, 89	부여 나성	1구역		우사(신축)	○	도지정문화재 인접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수목 식재는 관계전문가 협의 후 시행할 것

24.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소형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에 소형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홍산현 관아(사적 제481호 / 2007.07.3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 일원
- (3) 신청내용<자가용 소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토로 49-4{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 사업내용
 - 규모 : 건축연면적 99.32㎡, 건물 최고높이 5.4m, 1층 단독주택
 - 설치용량 10.9kw, 설치면적 50㎡, 지반으로부터 높이 최저 3.6m, 최고 4.8m

라. 참고사항

(1) 관리단체의견

- 본 신청건은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주변 소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허용기준상 3구역(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에 해당함.
- 해당위치는 부여 홍산현관아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 약70m 이격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부여 홍산현관아와 사업대상지는 사이는 밭과 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주택 옆 부지(홍산현관아 반대 방향)에

설치하여 경관상 저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높이 또한 지붕에 가려져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소형 자가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주택 마당 일부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5.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생생팜체험단지 공공판매장 및 휴게음식점)을 건립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생생팜체험단지 공공판매장 및 휴게음식점)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 제165호 / 1968.12.19. 지정)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산1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공공판매장 및 휴게음식점 건립>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620-26번지(유존지역 아님){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50m 이격/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2,725㎡, 건축면적: 316.33㎡, 연면적: 453.95㎡
 - 규모 : 지상1층, 건물높이 5.15m(옥탑포함 7.4m, 계양대 10.4m)
 - 구조 : 일반철골조
 - * 3구역 :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이하, 한변의 길이 25m 이상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개별 심의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6.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생생팜체험단지 가공 및 공동체험장)을 건립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생생팜체험단지 가공 및 공동 체험장)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 제165호 / 1968.12.19. 지정)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산1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가공 및 공동체험장 건립>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620-10번지(유존지역 아님){문화재 구역으로부터 약 397m 이격/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 사업내용

구분	가공체험장	공동체험장
대지면적	1,445㎡	
건축면적	117㎡	280.6㎡
규모	18m	30m
건물높이	7.2m(계양대 9.2m)	4.1m
구조	철근콘크리트	파이프조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7.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고령읍 지산리 산8번지
- (3) 신청내용<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659(유존지역 아님){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건축규모 : 지상 1층/1동, 대지면적 512.00㎡ / 연면적 99.00㎡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 칼라아스팔트씽글(경사지붕), 최고높이 5.5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시행할 것

28. 금정산성 주변 비닐하우스 증축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사적 제215호 「금정산성」 주변 비닐하우스를 증축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금정산성 주변에 묘목 종자 배양사업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금정산성(사적 제215호 / 1971.02.09. 지정)
 - 소재지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 일대
- (3) 신청내용<비닐하우스 증축>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103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7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묘목 종자 배양사업 규모 증설
 - 기존비닐하우스 : 대지 1,385㎡ 내 30평(99.2㎡)
 - 증축비닐하우스 : 12.7평(42㎡=3.5×12)

라. 의결사항

- 보류
 - 기존 허가사항 등 이력 확인 후 재검토